

제321회 임시회
2013. 6. 18.(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18.(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형근 의원 외 6인

나. 제출일자 : 2013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6월 12일

-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형근 의원)

가. 제안이유

-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 명칭의 정확화를 위하여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시하고, 명칭의 정확화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명칭의 명확화(안 제2조)

- 도지사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충청북도 의회의원 → 충청북도의회 의원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신설(안 제3조 2항)

-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도내 시·군 의회의원 및 시·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일치(안 제8조)

- 감사관실 → 감사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변경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기타 → 그 밖에
- 띄어쓰기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관실”을 “감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시하여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개정을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청북도 의회의원”을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신설)

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도내 시·군 의회의원 및 시·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 의회의원”을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을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하며,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8조제6항에 따른”으로,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8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행하게 하기 위하여”를 “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생략)</p> <p>2. 4명의 위원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p> <p>1.~2. (생략)</p> <p>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 2. (생략)</p> <p>3.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4명의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② <u>충청북도 의회의원</u>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u>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 <u>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u>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u>으로 한다.</p>	<p><u>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u></p> <p><u>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u>2.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u>3. 도내 시·군 의회의원 및 시·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p> <p>② <u>충청북도의회 의원</u>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u>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 <u>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u>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남은기간</u>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1. 법 <u>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u>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u>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u> 등록사항 심사 위임</p> <p>2. 법 <u>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u></p> <p>3. 법 <u>제22조의 규정에 의한</u>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p> <p>4. (생략)</p> <p>③ (생략)</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법 <u>제8조제6항에 따른</u>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u>제8조제11항에 따른</u> 등록사항 심사 위임</p> <p>2. 법 <u>제8조의2에 따른 조치</u></p> <p>3. 법 <u>제22조에 따른</u>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 따라</u>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u>행하게 하기 위하여</u>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간사는 <u>감사관실</u>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u>하기 위하여</u>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간사는 <u>감사관</u>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관계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
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